

청주지방법원 2016. 4. 20 선고 2014가단15112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(일부판결)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16. 3. 30.

판결 선고2016. 4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. 10. 15.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951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신용보증기금은 2010. 2. 25. A와 사이에 2010. 2. 25. 신용보증원금 28,500,000원,

신용보증기간 2010. 2. 25.부터 2011. 2. 24.(후에 2014. 2. 21.까지로 변경되었다)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위 약정에 기하여 2010. 2. 25.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3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A는 2013. 11. 11.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, 신용보증기금은 2014. 2. 5.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출원리금 29,033,6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. 신용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금은 146,540원이고,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4. 2. 5.부터 현재까지 연 12%이다.

다. A는 2013. 10. 1.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3. 10. 15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A는 당시 위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라.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A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. 12. 2. 청주지방법원 2013하단116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,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

마. 파산관재인은 2015. 6. 19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'채무자회생법'이라고 한다)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괴산군수, 청주시 상당구청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부인권의 행사

(1)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'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'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,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

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6637, 56644 판결 등 참조).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,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6637 판결).

(2)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A는 2013. 11. 11.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기 약 한 달 전인 2013. 10. 1.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총채권자의 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.

피고는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,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

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,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. 10. 15.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951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현우

별지